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등 국가책무 신설
및 주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363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등 국가책무 신설 및 주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3

I. 제안경위

2024년 12월 10일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함) 효율적 수립·시행, 해양폐기물 수거 등을 위하여 해양 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정부는 2021년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한 바 있으며, 기본계획은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부터 수거·처리까지 전 주기적 관리 강화를 통하여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을 2030년까지 60% 감축, 2050년까지 제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에 따른 추진 실적 평가는 해양폐기물 현황 관련 기초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량사항인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을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저감 및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6조).

Ⅲ. 검토의견

1. 해양폐기물 모니터링 등 국가책무 신설 및 주기적 실태조사 의무화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무를 신설하고, 해역관리청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신설 및 안 제6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폐기물 관리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등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실태조사) ① 해역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제6조(실태조사) ① ----- ----- -----

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3. (생략) ②·③ (생략)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에 따르면 해역관리청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 해양폐기물의 수거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첨부1 참고), 해양오염퇴적물 정화복원사업 실태조사 및 해양 침적폐기물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해양쓰레기 발생량의 경우 지난 2018년도에 조사한 이후로 새로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현재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관리를 통해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생각됨.

□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재도 해양폐기물에 대한 다양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해양폐기물 발생량 현황에 대한 최신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2024년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등 해양폐기물에 대한 실태조사가 미흡한 상황으로

주기적 실태조사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보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양폐기물 저감을 위한 효과적인 전주기 관리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실태조사의 주체와 관련하여 부담에 관한 검토, 실태조사의 주기와 관련된 법제적인 검토 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음.

현행법에 따르면 실태조사의 주체는 ‘해양관리청’인데 영해, 내수 등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배타적 경제수역 등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담당하고 있는데,¹⁾

해양쓰레기 등의 발생지역이 많은 바닷가와 영해, 내수 등 해역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가 현실적으로 실태조사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양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양관리청을 말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해양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실태조사 수행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관련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해역관리청 현황

해역관리청	대상해역	면적(km ²)	
지자체	바닷가	30,076	
	영해+내수	85,123	
	소계	115,199	
국가 (해양수산부)	배타적 경제수역(EEZ)	283,949	
	환경관리해역(9개소)	2,121	
	국가어항(115개)	35	
	무역항, 연안항(57개)	1,286	
	소계	287,391	

* 해양수산부 제출

또한, 안 제4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그 주기가 불명확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이를 명시하거나 실태조사의 주기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안 제4조제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니터링’의 의미가 예산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해양폐기물 현황을 살펴보라는 의미인 것으로 보이는데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은 주요 정점(20~60개)에 대하여 해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현황 및 성분을 파악하는 사업으로 2008~2023년 실시되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의견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주기적인 해양 폐기물 실태조사 실시를 의무화함으로써 해양폐기물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 수립 및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지만,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조사 주기 등의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418

첨부 1

해양쓰레기 관련 통계 자료

구분

세부내용

해양쓰레기 발생 및 수거량 현황

□ 해양쓰레기 발생량

- 국내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매년 약 14.5만톤(초목류 포함)이며, 이 중 육상기인은 65%(9.4만톤), 해상기인은 35%(5만톤)으로 추정

구 분	세부 구분	초목류 포함 시		초목류 제외 시	
		발생량(톤)	비율(%)	발생량(톤)	비율(%)
육상기인	하천 유입	26,108	17.9	26,108	31.0
	해안가	7,554	5.2	7,554	9.0
	홍수기 초목	61,152	42.1	-	-
	소계(A)	94,814	65.3	33,662	40.0
해상기인	어선어업	38,616	26.6	38,616	45.9
	양식업	6,462	4.4	6,462	7.7
	항만	5,366	3.7	5,366	6.4
	소계(B)	50,444	34.7	50,444	60.0
합계(A+B)		145,258	100.0	84,106	100.0

출처: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연구(2018, KMI)

□ 해양쓰레기 연도별 수거량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침적	25,799	18,212	18,944	22,287	25,282
부유	7,713	8,558	6,067	6,691	10,630
해안가	75,132	111,592	95,725	97,077	96,018
총 수거량(톤)	108,644	138,362	120,736	126,035	131,930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결과

□ 국가 해안쓰레기 모니터링 사업 결과('21~'23)

분류	2021		2022		2023	
	개수(개)	무게(kg)	개수(개)	무게(kg)	개수(개)	무게(kg)
플라스틱	112,663	3,475	168,179	2,805	68,262	2,896
종이	724	13	834	19	648	10
목재	2,072	1,236	1,965	998	1,713	713
금속	1,795	194	2,313	175	1,515	82
섬유	633	59	513	38	604	38
유리	3,805	106	3,323	90	3,603	209
고무	482	79	454	89	416	80
기타 (혼합재질)	2,278	492	4,793	126	1,715	127
합계	124,452	5,654	182,374	4,340	78,476	4,155

* 60개 정점에 대한 조사 수행 결과